

1. 개정이유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4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서’, ‘병역사항 공개서’,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서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부령 제 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역사항 신고서

(앞쪽)

※ 항목별 작성방법은 뒤쪽의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신고대상자 병역사항 등					
①본인과의 관계	②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⑥병역사항	⑦비고
			⑤등록기준지		

※ 여성 신고의무자 중 기혼자는 배우자에 대해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신고대상) []혼인 전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신고 비대상)

※ 직계비속을 적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직계비속 없음 []18세 미만임(출생년도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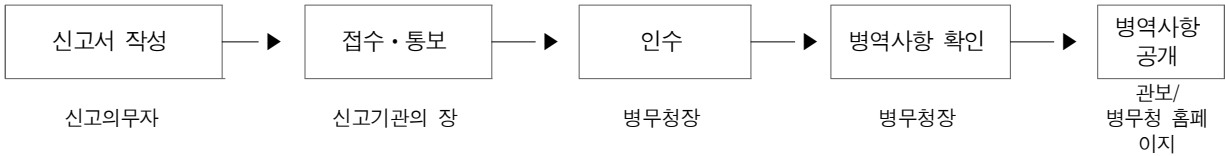
신 고 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1.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린 사람은 병역공개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의무자는 이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하여 다음 병역사항 변동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사람)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는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다음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을 포함한다) 복무 중인 사람
 2. 신고의무자와의 혼인 당시 병역준비역으로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 **직계비속**은 18세 이상의 남자인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 병역사항 작성요령

- ①, ②, ③ 신고의무자 본인 포함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순으로 적습니다.
 - ※ 기재요령: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 "3남", "손자", "외손자" 등
- ⑥ 병역사항란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 및 직계비속 신분별로 아래 항목의 병역사항을 적습니다.
 1. 18세인 신고대상자: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예시) 0000년 병역준비역 편입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복무 분야(군별)
 - 나. 복무부대(사단급 이상의 부대인 경우는 사단급·군단급 부대 또는 군사령부·작전사령부를 기재하고, 여단급 이하의 부대는 사단급 또는 여단급 부대를 기재한다) 또는 복무기관
 -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주특기 부호 또는 주특기 명) 마. 입영 연월일
 - 바.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사. 전역·소집해제 사유
 4. 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전환복무 등으로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복무 분야(군별)
 - 나. 복무부대(사단급 이상의 부대인 경우는 사단급·군단급 부대 또는 군사령부·작전사령부를 기재하고, 여단급 이하의 부대는 사단급 또는 여단급 부대를 기재한다) 또는 복무기관
 - 다. 계급 라. 병과 및 군사특기(주특기 부호 또는 주특기 명)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 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합니다)
 -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사람
 -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
 - 다.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
- ⑦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이나 직계비속의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질병명·심신장애 내용 비공개요구" 또는 "처분사유 비공개요구"라고 적습니다.

병역사항 공개서

신고의무자			
소속	직위(직급) ()	성명	생년월일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역사항	비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